김해내덕지구 중흥S-클래스 더퍼스트 특별공급(다자녀가구) 당첨자 구비서류 안내

■ 특별공급(다자녀가구) 당첨자(예비당첨자 포함) 서류제출 안내

※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2.01.19)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,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 접수 가능합니다..(※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하며, 신청 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)

※ 당첨자께서는 정당계약 체결 이전 아래 서류제출 일정에 맞추어 방문 예약 후 접수장소에 방문하시어 아래에 자격 검증 서류 및 부적격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고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서류접수 예약된 일시에 당첨자 본인 외 동반1인까지 (대리인 접수 가능) 출입이 가능하며, 임산부, 노약자 및 만성질환 환자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시고 대리인을 통하여 서류접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서류제출 일정 및 장소

구 분	서류접수기간	접수장소
당첨자 서류 접수	2022.02.14.(월) ~ 2022.02.21.(월) 8일간, 09:30 ~ 17:30	경상남도 김해시 무계동 391-3 (중흥S클래스 견본주택) ※계약체결은 당첨자 발표 후 별도 공지 예정

■ 특별공급(다자녀가구) 당첨자(예비당첨자 포함) 자격검증 제출 서류(계약체결 전 제출)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
	필수	추가(해당자)			
공통서류	○		무주택서약서	본인	· 당사 견본주택 비치
	○		신분증	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	· 본인 및 세대원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	· 본인 및 세대원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주소변동 사항·사유발생일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 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· 본인 및 세대원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	· 본인 및 세대원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	· 출입국사실증명원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·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,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
		○	복무확인서		·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(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)
		○	출입국사실증명서	피부양 직계 존·비속	·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 존·비속이 있는 경우 · 해외근무자 단신부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세대원 모두제출 · 국내거주기간 확인(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,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) **[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]** –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**[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]** –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–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
		○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배우자	·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· 주민등록번호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 –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	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비속	·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"미혼인 자녀"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· 본인 및 세대원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추가서류		○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· 공급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경우
	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·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· 본인 및 세대원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자녀	· 재혼·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"상세 " 로 발급 · 본인 및 세대원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	○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피부양 직계존속	·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· 성명, 주민등록번호뒷자리, 주소변동 사항·사유발생일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발급
		○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
		○	임신진단서 또는출생증명서		·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·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 외 불가)
		○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		·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· 당사 견본주택 비치
부적격통보를 받은자		○	무주택 소명 서류	해당주택	·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·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· 소형·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·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	○	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		· 당첨 사실 무효확인서,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 서류 등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
제3자 대리인 신청시 (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)		○	인감증명서	본인	·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 발급용)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		○	인감도장		·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
		○	위임장		·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· 당사 견본주택 비치
		○	신분증	대리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사본 1통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)

※ 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
※ 사업주체에서 적격자 확인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.

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공급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, "주소변동이력"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.

–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세대구성 사유,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, 현 세대원의 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,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

–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전체 포함)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